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5,969호 1999. 4. 15.

개 정 이 유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부담을 주고 있거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시설물 관리주체와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시공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의 치유가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도록 한 것을 폐지함(현행 제15조 삭제).
- 나. 무한책임을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완료 후에도 시공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구조안전상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보수책임을 폐지함(현행 제16조 삭제).
- 다. 유지관리업체가 시설물의 보수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를 폐지함(현행 제18조제5항 삭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지정된”을 “등록한”으로, “제11조”를 “제9조”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를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로 한다.

제9조의 제목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지정을 취소”를 “등록을 말소”로 한다.

제9조의2 본문중 “지정받을”을 “등록할”로 하고, 동조제3호중 “지정이”를 “등록이”로 한다.

제9조의3중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서를”을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로 한다.

제9조의4의 제목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지정을”을 “등록을”로 하며, 동조제1호중 “지정을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안

전진단전문기관지정서를”을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로 하며, 동조제6호중 “지정요건에”를 “등록요건에”로 한다.

제9조의5제1항중 “지정의”를 “등록의”로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3항·제5항 및 제35조제2항·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중 “지정을”을 “등록을”로 한다.

제40조제1호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지”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로 하고, 동조제2호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2호중 “제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정의”를 “등록의”로 하며, 동조제10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중이거나 정밀안전진단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보수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중인 시설물에 대한 보수설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회보